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16.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8. 8. 21.
3.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9월 7일 상정(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치영 복지본부장)

1.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사례판정과 노인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사례조치 및 사후관리 등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나. 노인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조치, 사후관리와 학대피해노인가족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등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나. 노인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조치, 사후관리와 학대피해노인가족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등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나. 서부권역의 노인학대 보호사업을 위해 신규로 설치 예정인 「서울시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보호
관련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1차, 2차 모두 적정하다고 결정되었음.

다. 노인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수탁법인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지속적인 서비스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5.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장애인 유형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6.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장애인 유형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자립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7.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현 수탁법인이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8.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현 수탁법인이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16.1.1.~18.12.31.)

나. 학령기 대상 특화된 전문성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본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발달장애아 보호자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12.5.2.(제237회) 최초 의회 동의로부터 7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 경우로써 의회동의 대상이 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10.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16.1.1.~18.12.31.)

나.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12.5.2.(제237회) 최초 의회 동의로부터 7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 경우로써 의회동의 대상이 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Ⅲ. 주요내용

1.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추진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방배동)
- 이용대상 : 서울시 남부 거주하는 학대받는 어르신
-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17. 10. 1 ~ 2022. 9. 30)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 사. 소요예산 : 384,870천원 (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위탁사무명 :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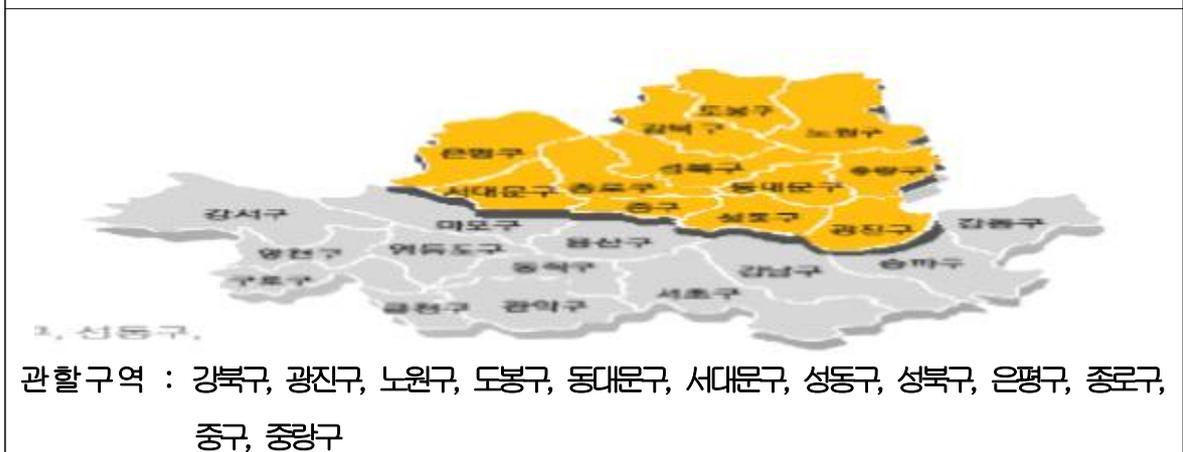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수유동)
- 이용대상 : 서울시 북부 거주하는 학대받는 어르신
-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17년 7월 ~ 2022년 7월)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단법인 참누리)
- 사. 소요예산 : 384,870천원('18년(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사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 접수
-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태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라. 위탁시설 개요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의 경우 신규로 개설되는 것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2,000천원('18년(국비 81,000천원 / 시비 81,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제36조의 1(노인여가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또한 신 노년층 등장에 따라 이들의

필요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종암동 66-14)
- 개관일자 : 1999.6.30.
- 시설규모 : 대지 1,088m², 2,595m²(지하1층~지상5층)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60세이상 어르신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17년 8월 ~ 2022년 8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 1,568,190천원('18년)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5.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운영의 효율성에서 더 바람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사회적응 훈련)
- 장애인에 대한 정서안정·여가 지원(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 기타 부동산, 주요 비품 및 장비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61길 81
- 설립일자 : 2011.09.01.
- 규모 : 부지 205㎡, 건물 291.28㎡(지상2층, 지하1층)
- 시설기능 :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7.9.1. ~ 2022.8.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아. 소요예산 : 250,000천원(2018년)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6.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바람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사회적응 훈련)
- 장애인에 대한 정서안정·여가 지원(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기타 부동산, 주요 비품 및 장비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 설립일자 : 2011.09.01.
- 규모 : 부지 198.3㎡, 건물 196.75㎡(지상2층)
- 시설기능 :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7.9.1. ~ 2022.8.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아. 소요예산 : 250,000천원(2018년)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7.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작업활동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화장지 생산 및 판매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기술,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유리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유통 및 판로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 설립일자 : 2011.05.11.
- 시설규모 : 부지 4,831㎡, 건물 1,124.54㎡(지상2층)
 - 작업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 등
- 시설기능 :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화장지 생산·판매)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7.11.16. ~ 2022.11.15.)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아. 소요예산 : 727,016천원(2018년)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8.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작업활동 등)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다양한 채널의 기증처(기업·단체·종교기관·지역사회·개인)를 통한 기증물품 수집에 민간 운영이 관보다 유리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유통 및 판로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설립일자 : 2011.05.23.
- 시설규모 : 부지 1,612㎡, 건물 1,972.6㎡(지하1층, 지상2층)
 - 작업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 등
- 시설기능 :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증물품 가공·판매)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8.3.7. ~ 2023.3.6.)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사.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아. 소요예산 : 706백만8년)
-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자립 서비스 제공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학령기 대상 특화된 전문성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본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발달장애아 보호자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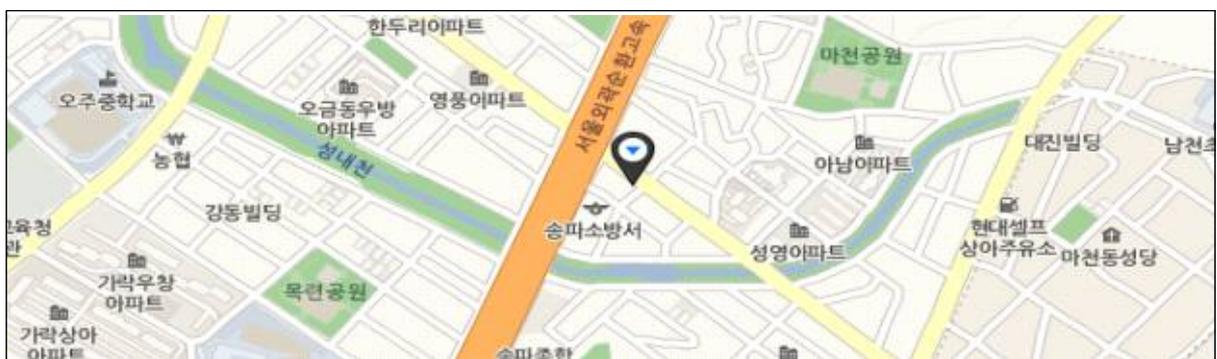
-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각, 운동능력,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 사회성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시설규모 : 건물 1,021.69㎡(3~4층, 옥탑층)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사.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아. 소요예산 : 521백만원(2018년)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10.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15 엘림넷 5층
- 시설규모 : 건물 703㎡(5층, 1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노인복지법」 제36조의1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5.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

6.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

7.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

8.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

9.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10. 서울시 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의 제출 개요

- 제283회 금번에 복지본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 7건, 재위탁 2건, 최초위탁 1건 등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재위탁 · 재계약의 정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2017년 7월 개정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4회차마다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의 경우 그 기준점이 모호하여, 현재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바, 미동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통제없이 장기간 연장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도출되어, 2017년 민간위탁 조례 개정시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여 조례 공포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금번에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회 미동의 상태인 위탁사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다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2017.7.13. 개정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문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민간 위탁사무는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의회동의 절차 특례²⁾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의회의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6567호, 2017.7.13.)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없었던 민간위탁 사무 중 10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장기간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복지본부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표시하고 있는 사업 효과성 평가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및 평가는 기관운영 지표와 사업 운영지표상에 정성 및 정량화 지수로써 표시되어 있음.
 - 그러나 사업자 선정 이후 수탁자의 업무집행능력 및 자체 내부시설 경영 능력 등을 유사 민간운영시설과 비교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수탁자로서 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비록 기존 수탁자와 사무위탁되는 재계약이지만 민간위탁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탁자 업무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본부에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점 없는 한 연속하여 재계약·재위탁되어 장기간 수탁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방침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등 무사안일한 위탁 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재계약·재위탁 시에도 수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를 표기함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

가.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현장으로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할 노인권익보호기관을 설립한 바, 이를 재단법인 천주교 카리타스수녀회 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2017년 9월말)³⁾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5년간(2017.10.~2022.9.) 아래 표와 같이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방배동)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위탁기간 : 2017.10.1 ~ 2022.9.30.(5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84,870천원 (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3) 현수탁기관((재)천주교카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위탁기간 : 2012.10.01.~2017.9.30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직 및 직원현황 >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 초기 설립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전략이 계획적이며 각 사업별 목표 및 하위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 집행부의 자체 평가자료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가 반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즈맨 사업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집행부 자체 평가의 지적 사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해 연도 실적 평가를 차년도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바, 그 간의 추세 및 실질적 목표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목표 설정을 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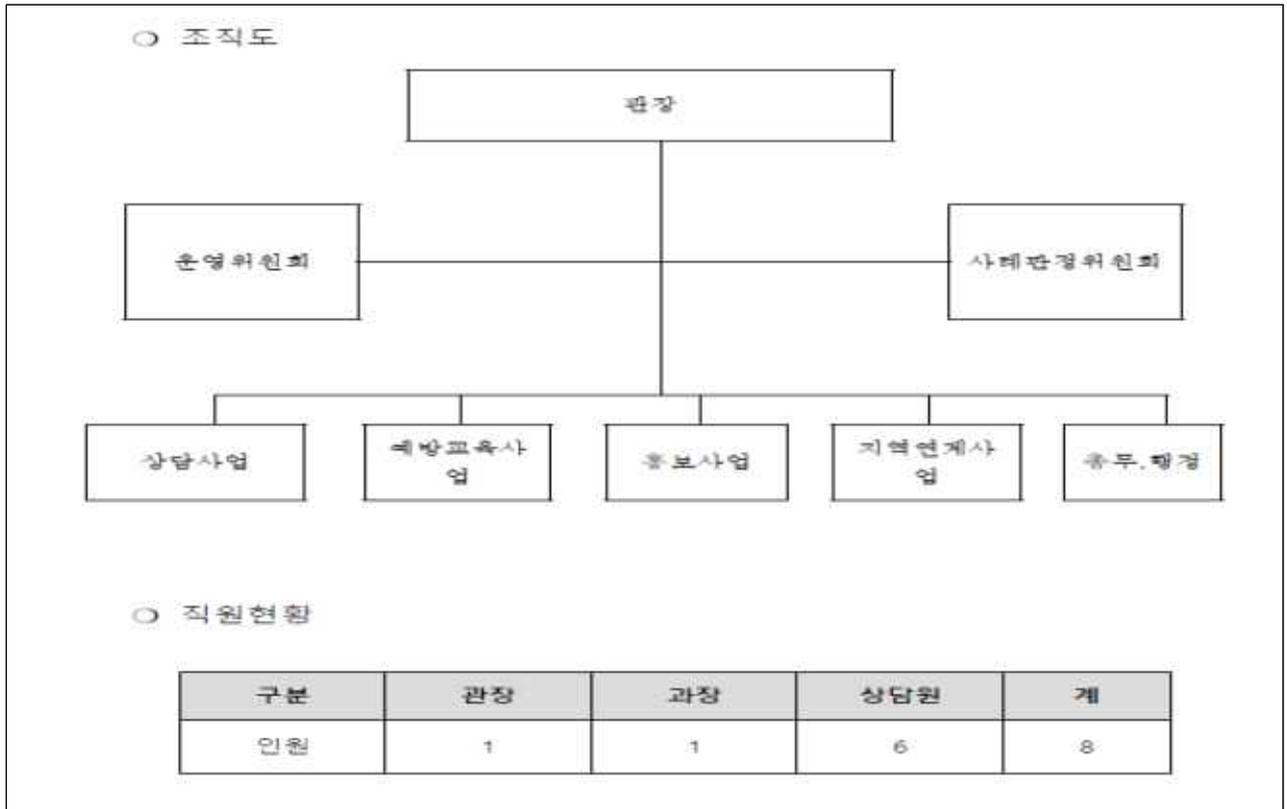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현장으로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할 노인권익보호기관을 설립한 바, 이를 (사단법인)참누리측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2017년 7월말)⁴⁾ 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5년간(2017.7.~2022.7) 아래 표와 같이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69 (수유동)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시설현황 :
- 위탁기간 : 2017.7.28 ~ 2022.7.27.(5년)
-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 384,870천원 (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4) 현수탁기관((사)참누리 위탁기간 : 2012.7.28.~2017.7.27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직 및 직원현황 >



- 집행부의 자체 평가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성과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 목표치의 경우 사업달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다시 목표가 재설정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목표달성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 간의 업무추진 실적 및 사업목표 추세와 실질적 목표달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기관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원의 인센티브 및 교육지원을 해 준 실적은 있으나, 그 기준이 어떠한지 내지 운영규정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직원의 인센티브 및 교육지원제도에 대한 기관의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에 따라 사례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는 등 계획에 적합한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사료됨.

다.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위탁기간 : 2018.9. ~ 2023.8.(5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62,000천원 (국비 81,000천원 / 시비 81,000천원)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 갈등으로 인해 어르신의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이에 따라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서부권의 경우는 학대어르신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재한 바, 금번 신설되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노인인권 침해 사각지대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대상 사무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2017년 8월8일)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5년간(2017.8~2022.8) 재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종암동 66-14) - 개관일자 : 1999.6.30. - 시설규모 : 대지 1,088㎡, 건물 2,595㎡(지하1층~지상5층)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만60세이상 어르신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 5년 (2017년 8월 ~ 2022년 8월) -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 1,568,190천원(2018년) |
|---|

- 집행부 자체 평가자료를 보면, 시립성북노인복지관은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여가환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지관 운영·

관리 및 시설 접근성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또한 재정 및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운영법인의 전입금 이행률 및 중·장기 계획 등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며,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서상의 실행도 이수율이 높고 예산 집행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그 밖의 직원업무 평가 및 직원교육 실태와 직원의 고충처리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시립성북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

○ 평가 결과

구분	총점등급	평가 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귀 시설	A	A	A	B	A	A	A
서울특별시 [N= 38]	A	A	A	B	A	A	B
전국 [N= 248]	B	A	B	B	B	B	B

(주1) 등급구분기준 :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 70미만', 'F등급 60점미만'
 (주2) 영역별 배점 : 시설 및 환경(A) 5%, 재정 및 조직운영(B) 10%, 인적자원관리(C) 2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0, 이용자의권리(E) 3%, 지역사회관계(F) 12%

○ 등급 분포

<전국기준 등급 군(群) 분포>

- A등급 군(群)은 총 171개소(69%)입니다.
- B등급 군(群)은 총 29개소(11.7%)입니다.
- C등급 군(群)은 총 9개소(3.6%)입니다.
- D등급 군(群)은 총 8개소(3.2%)입니다.
- F등급 군(群)은 총 31개소(12.5%)입니다.

<등급구분원칙>

- A등급 : 90점 이상
- B등급 : 80점 이상 90점미만
- C등급 : 70점 이상 80점미만
- D등급 : 60점 이상 70점미만
- F등급 : 60점 미만

귀 기관의 2015년도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는 'A' 등급입니다.

마.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는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랑구에 위치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임.
- 민간위탁기간은 5년(2017.9.1. ~ 2022.8.31.)으로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와 재계약할 계획에 있음.
- 보건복지부의 다운누리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에 의하면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의 평가결과는 “A”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등의 평가결과가 “B”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평가영역

평가영역	주요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등
재정 및 조직운영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 등
인적자원관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총원율, 월평균확보 직원수 대비 자격증 소지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의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및 시설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서비스의 계획·실시·과정·평가·반영 등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등
지역사회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등

- **평가결과 : A**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A	B	B	A	A	A

- 이러한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 및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음.

바.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는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임.
- 민간위탁기간은 5년(2017.9.1. ~ 2022.8.31.)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재계약할 계획에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여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3년간(2013.1.1. ~ 2015.12.31.) 수행한 성과평가에 의하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의 평가결과는 “A”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인적자원 관리의 평가결과가 “B”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평가영역

평가영역	주요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등
재정 및 조직운영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 등
인적자원관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총원율, 월평균확보 직원수 대비 자격증 소지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의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및 시설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서비스의 계획·실시·과정·평가·반영 등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등
지역사회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등

○ **평가결과 : A**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A	A	B	A	A	A

- 이러한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 및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음.

사.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는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으로 화장지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임.
- 민간위탁기간은 5년(2017.11.16. ~ 2022.11.15.)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과 재계약할 계획에 있음.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4년간(2013.11.16. ~ 2017.7.4.) 수행한 현장방문 운영

실태 평가에 의하면 i)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80% 이상이며, ii)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용자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활용 등이 우수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설이고, iii) '16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1.2점 A등급을 받은 우수시설 이기는 하나,

- 미흡한 점으로 i) 종사자 성범죄 조회 미실시('15년, '16년)한 바가 있으며, ii) 시설 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 관리 소홀을 들 수 있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이 필요하겠음.

아.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는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으로 기증물품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시설임.
- 민간위탁기간은 5년(2018.3.7. ~ 2023.3.6.)으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재계약할 계획에 있음.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4.3.7. ~ 2017.6.30. 3년간 수행한 현장방문 운영실태 평가에 의하면 i) 근로장애인 모두에게 최저임금 이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ii)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기증 물품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기증과 나눔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iii) '16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89.4점 B등급을 받은 우수시설이나, 미흡한 점으로 i)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이 누락되는 등 구성 부적정 문제가 있었으며 ii) 물품관리자 및 시설 관리자 미지정 등이 있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음.

바.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각·운동능력,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탁사무로 하는 송파구에 있는 시설임.
-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재위탁할 계획에 있음.
- 조직 및 인력운영 면에서 발달장애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사회적 기여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기관 고유 사업의 대체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집행부의 자체 평가자료를 감안할 때,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서울시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지원확보노력이 뛰어나며,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 서울시 의회 내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나, 장기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한 기관의 발전계획 즉, 공식적인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자.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동의안

-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전문수어 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을 강화하며,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을 하고, 수어를 배우고자하는 일반 시민 교육을 하는 등을 위탁사무로 하는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임.
-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적용하는 바,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와 재위탁할 계획에 있음.
- 4인으로 구성된 적은 인원으로 2009년 이후 교육, 연계, 기획 등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온 점,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 탁월한 점,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비교할 때 공인수화통역사 배출 실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 기관 구성원들 간의 업무차별성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예산액과 결산액의 조화수준을 높일 것이 기대되며,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고 환경변화의 방향성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쉬운 부분이라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쟁점조문 비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년 1월 5일	2017년 7월 13일	2017년 1월 5일	2018년 5월 3일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u>제1항에 따라 사회</u>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p>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 ④ 생략</p>	<p><u>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④ ...,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p>
		<p>의회 동의의무 부과하지 않음.</p>	

3 종합의견

- 본 위원회에 제출된 10건의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에 대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금번에 제출된 위탁동의안은 회계·인사·운영 등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탁법인이 관리·운영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여짐.
- 복지분부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탁기관들이 지도·관리 미흡, 허점 또는 태만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해당사업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복지본부 소관의 수탁기관은 당초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나, 각 수탁기관은 포괄적인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되지 못하고 단지 운영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복지본부는 향후 구체적인 목적과 중장기, 단기 등의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평가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달성 등 위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출된 10건의 동의안 중 7건⁵⁾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집행부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제출된 일부 동의안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예산편성 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등 민간위탁과 관련해 조례상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절차상의 위법 여부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의회 동의 전 재계약 민간위탁 기관

연번	민간위탁기관명	관련부서
1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인생이모작지원과
2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어르신복지과
3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장애인복지정책과
5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6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7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토론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업명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기관소재지 :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방배동)
- 운영법인 :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 운영인력 : 9명 (기관장 1명, 상담원 8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7.10.1.~2022.9.30.(5년)
- 위탁사무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관할구역 :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 '18년 예산액 : 384,870천원 (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05.1.1. : 최초 지정
- '17.4.24. :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위탁'이 타당)
- '17.8.16.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7.8.18.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적격)
- '17.9.30. : 협약 체결

⇒ 구(舊)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운영하다가,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17.4.24.)에 따라 '위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절차를 진행함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마.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 법 제39조의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임승현 (☎2133 - 7415)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0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업명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기관소재지 : 강북구 노해로 69 (수유동)
- 운영법인 : 사단법인 참누리
- 운영인력 : 9명 (기관장 1명, 상담원 8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7.7.28.~2022.7.27.(5년)
- 위탁사무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관할구역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강북지역)
- '18년 예산액 : 384,870천원 (국비 183,150천원 / 시비 201,72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14.4.28. : 최초 지정
- '17.4.24. :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위탁'이 타당)
- '17.5.25.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7.6.8.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적격)
- '17.7.28. : 협약 체결

⇒ 구(舊)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운영하다가,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17.4.24.)에 따라 '위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절차를 진행함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마.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 법 제39조의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임승현 (☎2133 - 7415)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18.9.~2023.8.(5년)
- 운영인력 : 8명 (기관장 1명, 상담원 7명)
- 위탁사무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
- 관할구역 : 종로구·중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8개 자치구
- '18년(하반기) 예산액 : 162,000천원 (국비 81,000천원 / 시비 81,000천원)

나. 민간위탁 추진경위

- '18.1.4.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 변경내시 통보
(1개 기관 추가 운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라.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③항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①항 : 법 제39조의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변경내시액 추경 편성 요청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비고
	남부	북부	
운영체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소재지	서초구	강북구	
운영인력	9명 (기관장1, 상담원8)	9명 (기관장1, 상담원8)	
관할구역	13개 자치구(강남지역)	12개 자치구(강북지역)	
개소년월	2004. 12.	2011. 7.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 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 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임승현 (☎2133 - 7415)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2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인생이모작지원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현 수탁법인의 노인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나.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종암동 66-14)
- 시설규모 : 대지 1,088㎡, 건물 2,595㎡(지하1층~지상5층)
- 준공일자 : 1999. 6. 30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60세이상 어르신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2017.08.09 ~ 2022.08.08.)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업무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 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1,568,190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제36조의 1(노인여가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08.09 ~ 2002.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2차 : 2002.08.09 ~ 2005.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3차 : 2005.08.09.~2008.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4차 : 2008.08.09.~2011.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5차 : 2011.08.09.~2014.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6차 : 2014.08.09.~2017.08.08(3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신 노년층 등장에 따라 이들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6조의 1(노인여가복지시설)

-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김기곤 (☎ 2133-7799)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장애인 유형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관리·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61길 81
 - 설립일자 : 2011.09.01.
 - 시설규모 : 부지 205㎡, 건물 291.28㎡(지상2층, 지하1층)
 - 시설기능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7. 9.1. ~ 2022.8.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 : 250,000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바람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김선애 (☎ 2133-7455)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장애인 유형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관리·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 설립일자 : 2011.09.01.
 - 시설규모 : 부지 198.3㎡, 건물 196.75㎡(지상2층)
 - 시설기능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7. 9.1. ~ 2022. 8.31.)
- 수탁자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 : 200,000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바람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김선애 (☎ 2133-7455)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현 수탁법인이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관리·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 개관일자 : 2011. 05. 11.
 - 시설규모 : 부지 4,831㎡, 건물 1,124.54㎡(지상 2층)
 - 작업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 등
 - 시설기능 :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화장지 생산·판매)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7.11.16. ~ 2022.11.15.)
- 수탁자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 : 727,016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작업활동 등)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화장지 생산 및 판매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기술,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유리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임종수(☎ 2133-7468)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현 수탁법인이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관리·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개관일자 : 2011.05.23.
 - 시설규모 : 부지 1,612㎡, 건물1,972.6㎡(지하 1층, 지상 2층)
 - 작업실,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 등
 - 시설기능 :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증물품 가공·판매)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8. 3. 7. ~ 2023. 3. 6.)
- 수탁자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 : 706,166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작업활동 등)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다양한 채널의 기증처(기업·단체·종교기관·지역사회·개인)를 통한 기증물품 수집에 민간 운영이 관보다 유리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임종수(☎ 2133-746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16.1.1.~'18.12.31.)
- 나. 학령기 대상 특화된 전문성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본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발달장애아 보호자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및 부칙 제2조(제6567호, 2017.7.13.)에 의거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제35조(재활자립 서비스 제공 등)

나. 대상사무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 센터	송파구 마천로 226	사북)한국장로 교 복지재단	'05.6.27.~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21('18년)

- 위탁기간 :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각, 운동능력,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 사회성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작성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박기용 (☎ 2133-745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8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16.1.1.~’18.12.31.)
- 나.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및 부칙 제2조(제6567호, 2017.7.13.)에 의거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대상사무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	사)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	'09.4.13.~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33('18년)

- 위탁기간 :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수어를 배우고자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작성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 (☎ 2133-7462)